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시행

국토해양부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의무학점제 전문교육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급기술자의 학점제 전문교육 시행 방법은 특급기술자의 경우 3년마다 전문교육을 통해 90학점을 채워야 한다. 90학점 중에는 반드시 전문교육으로 35학점을 이수한 후 나머지 55학점은 수강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획득하면 된다.[편집자 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공사,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한 특급기술자는 배치 후 3년마다 받는 전문교육(배치 전후 6개월간)을 통해 90학점을 채워야 한다.

학점은 건기법령에 의한 관련 협회, 교육기관의 법정 전문교육으로 35학점을 반드시 이수한 후 나머지 55학점을 수강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획득하면 된다.

수강교육은 대학원 진학, 외국어 교육(학원 수강 또는 시험성적), 학회 및 관련단체의 건설교육(원격교육 포함)으로 나뉜다.

무형식 교육은 저작(서적 집필 및 번역), 강의(건설 관련 외부 강의, 세미나·포럼 발표), 논문(건설학회·기술지 논문 및 보고서 게재, 특허 출원 및 획득, 신기

술·신공법 제안보고서), 연수 및 오제이티(OJT)교육, 학습활동(직무 관련 학습 후 보고서 제출, 현장견학 후 확인서 제출,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심의·심사(직무분야 각종 심의회의 참석)이다.

학점은 수강시간을 교육종류별로 책정된 학점 가중치와 곱해 환산하며 대학원 학위과정(취득학점당 10점), 집필·번역(건당 10~50점), 특허 출원 및 획득(건당 6~60점)의 학점비중이 높다.

전문교육을 받아 90학점을 채우지 못한 특급기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 후 차기 교육 때 이전에 미달된 학점까지 모두 채워야 한다.

학점인정 및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총괄, 관리한다.☎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학점인정 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3년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 정 사 항			
수강교육 (원격교육 포함)	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	1. 영 제8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1	수강시간	90학점
	학위과정	2.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60학점
	외국어과정	3.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30학점
	기타 교육과정	4.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	1	수강시간	60학점
무형식 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6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 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6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6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48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6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4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12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12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0.5	참여시간	18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4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30학점	